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등〉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6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   | 3 |
| 2.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 ..... | 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력정책심의회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 심의 주체의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 심의회 회의록  
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  
25조 및 제47조의2).

### Ⅲ. 검토의견

####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br>(생략)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br>(현행과 같음)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u>이를</u>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br>-----<br>-----<br>-----<br>-----<br>-----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u><br><u>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u> -----, --<br>-----<br>-----<br>-----<br>-----<br>-----.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u>기본계</u>                                                                                                                                                                                                                                             | ⑤ ----- <u>제2항에</u>                                                                                                                                    |

| 현행                                                                                                        | 개정안                                                                                                                       |
|-----------------------------------------------------------------------------------------------------------|---------------------------------------------------------------------------------------------------------------------------|
| <p><u>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⑥ ~ ⑨ (생략)</p> | <p><u>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u></p> <p><u>&lt;후단 삭제&gt;</u></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 발전설비 및 주요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sup>1)</sup> 등이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최종단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동의 절차를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으로써 다수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총괄위원

#### 1)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sup>2)</sup>의 충분한 논의와 합치된 의견을 기반으로 수립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법령상 계획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 및 수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행정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중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계획의 일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행정부의 재량권 인정 여부,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91명 참여하였다고 설명함.

## 2.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

개정안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등 주요 내용과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모두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3항부터 제6항).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설치 등)<br>①·② (생략)<br><br>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br><br><신설> |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br>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br>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보관·관리 등에-----<br/>-----.</p> |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sup>3)4)</sup>함.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포함한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33조<sup>5)</sup> 및 전력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2조<sup>6)</sup>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있음.

###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2026년 2월 기준, 전력정책심의회는 공무원 위원 5명 및 민간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됨.

### 5)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설비 계획, 주요 송·변전설비 확충 계획 등 전력정책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 국제 연료비 변동성 심화,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계통포화로 인한 발전설비 가동 지연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일반 국민의 삶의 질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중 최소 10명 이상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전력정책심의회 주요 회의내용과 과정을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전력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①간사는 심의회 개최시 별첨2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별첨4의 의안관리부를 작성·유지 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명 이상’ 추천에 대한  
적정성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 규정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위원 포함 입법례

| 위원회                         | 근거 법률                                  | 위원<br>정수 | 상임위<br>추천 정수 |
|-----------------------------|----------------------------------------|----------|--------------|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br>기본법」               | 12명 이내   | 3명           |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0명 이내   | 4명           |
|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br>지원 기본법」           | 7명 이내    | 2명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br>지원공사운영위원회   | 「해외건설 촉진법」                             | 7명       | 1명           |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br>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br>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명 이내   | 2명 이내        |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br>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          |              |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 「한국산업은행법」                              | 7명 이내    | 2명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8명       | 2명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br>영에 관한 법률」          | 9명       | 3명           |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이 요구되는 자문위원회인 전력정책심의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  
과 경험 등을 감안하여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은 지금도 작성·관리 중이나 내부검토가 진  
행 중인 정책방향, 전력기금 운용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대

외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37 |